|  |  |  |
| --- | --- | --- |
| **국무원의 외자성장을 촉진하는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국발[2017]39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및 각 직속기구:적극적인 외자이용은 중국 대외개방 전략의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경제글로벌화는 새로운 특징을 보이며, 중국의 외자이용은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심화하고, 간정방권(简政放权) , 방관결합(放管结合) , 서비스 개혁을 최적화하며, 중국의 외상투자환경의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외자성장을 촉진하며 외자이용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유관 사안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1. 외자 진입제한 한층 완화1.1 진입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되도록 빨리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투자환경의 개방성, 투명성 및 규범성을 한층 강화한다. (국가발전개발위 및 상무부 담당)1.2 시장진입 대외개방 범위를 한층 확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와 신 에너지 자동차 제조, 선박설계, 지선과 통용 비행기 유지보수, 국제해상운수, 철도여객운수, 주유소,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콜센터, 공연 중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외개방 일정 및 로드맵을 명확히 한다. (중앙선전부, 중앙망신판, 국가발전개발위,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송부, 상무부, 문화부,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철도국, 중국민항국 및 중국철도총공사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2. 재세지원정책 제정2.3 경외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투자를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경외투자자가 중국경내 거주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받은 이윤에 대해 장려류 투자항목에 직접 투자하고, 모든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이연납세정책을 시행하고 당분간 예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재정부 및 세무총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2.4 외자가 서비스무역 구조 최적화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도시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외자가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재정부, 상무부 및 세무총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2.5 외자이용과 대외투자간 결합을 촉진한다. 중국 경내기업(다국적회사 지역본사 포함)이 국내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외소득을 배분 받는 경우에 대하여, 관련 세수지원정책을 연구하여 반포한다. (재정부 및 세무총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2.6 다국적회사가 중국에 지역본사를 투자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각 지역이 법률법규에 의거 자금지원을 포함한 다국적회사의 지역본사 유치 정책조치를 반포하고, 글로벌산업구조 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가 담당)2.7 외자가 서부지역과 동북 구공업기지로 이전하도록 촉진한다. 기존 재정자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서부지역 및 동북 구공업기지의 국가급개발구(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및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등 포함, 이하 동문)의 과학기술혁신, 생태환경보호 및 공공서비스 등 분야의 건설을 지원하고, 투자유치환경을 개선하며 투자유치 품질을 향상시키고 높은 수준의 제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승계한다. (과기부, 재정부, 상무부 및 해관총서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2.8 중점 투자유치 플랫폼 기반시설과 중대 항목 건설을 지원한다. 성급 인민정부가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국가급개발구, 국경경제합작구, 크로스보더경제합작구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장려한다. 항목수익과 융자자구 균형의 지방정부 특정채권품목의 시범 시행을 가속화하여, 상기 구역 조건에 부합되는 중대 항목의 융자수요를 우선 보장한다. (과기부,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및 각 성급 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3. 국가급개발구 종합투자환경 개선3.9 국가급개발구에 투자관리권한을 충분히 부여한다. 국가급개발구가 행정허가권의 상대적 집중 개혁을 시범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국가급개발구가 간정방권, 방관결합, 서비스 개혁 최적화를 한층 추진하고, 우수한 외상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방면에서 시범과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도한다. (중앙편판, 과기부, 상무부, 해관총서 및 국무원법제판공실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3.10 국가급개발구 항목이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각 지역이 경제사회 발전기획, 토지이용 총체적 기획, 도시 총체적 기획에 부합되는 전제 하에, 국가급개발구의 외자이용 항목에 필요한 건설용지 지표를 우선 보장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보장해 준다. (과기부,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상무부, 해관총서 및 각 성급 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3.11 국가급개발구 투자유치 공간확장을 지원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국가급개발구에 대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구역 조정, 구역 확장, 인접 지역 및 가까운 개발구를 통합하며, 페이디산업단지(飞地园区) 를 설립하고, 매입한 저효율 용지에 대해 기획조정 및 심사비준 간소화 등 상응하는 편리를 제공한다. (과기부, 국토자원부, 주택도농건설부, 상무부, 해관총서 및 각 지방 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3.12 국가급개발구의 산업일체화 서비스능력의 향상을 지원한다. 조건이 성숙된 지역에 생산서비스형 외자기업을 유치하며,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 항목의 경내외 유지보수 업무를 시범 시행하고, 가공무역이 글로벌산업사슬 및 가치사슬로 중고급으로의 확장을 촉진한다. (상무부 및 해관총서가 담당한다)4. 인재의 출입국 편의4.13 외국인재 유치제도를 보완한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재중근무허가제도를 실시하며, ‘고지+승낙’ 및 ‘용결수리(容缺受理)’등 방식을 취하여 외국인재의 근무허가 처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2018년에 외국인 재중근무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반포하고, 기준 통일화 및 절차 규범화의 외국인재 재중근무허가제도를 구축한다. (외교부, 공안부, 국무원법제판공실 및 국가외국전문가국 등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 4.14 적극적으로 국제고급인재를 유치한다. 2017년 하반기에 외국인재 비자실시세칙을 제정하여 반포하고, 외국인재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발급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재 비자 유효기간을 완화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장기비자(5년에서 10년까지)를 발급하며, 또한 해당 비자로 근무허가 및 근무류 거류증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영주거류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반포하고, 외국인 영주거류 자격의 신청취득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외교부, 공안부, 국무원법제판공실, 국가외국전문가국 등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5. 경영환경 최적화5.15 외자법률체계를 강화하여 보완한다. 우선 내외자 법률 법규 통일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외자 기초법률을 제정한다. 외자 관련 법률, 법규, 규장과 정책성 문건을 정리하며, 국가 대외개방의 큰방향과 대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법률 법규 또는 조항을 기간 내 폐지 또는 개정하도록 추진한다. (유관 부처와 각 성급 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5.16 외상투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중앙 및 지방 외상투자기업의 신고체제를 개선하며, 경외투자자가 반영한 시급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하고, 외상투자기업이 진입 후 국민대우를 향유하는 보장수위를 높이고, 개방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행정사업성 요금과 정부성기금 및 정부가 책정하는 기업경영 서비스요금 등 기업요금 리스트제도를 구축한다.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상무부 등 유관 부처 및 각 성급 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5.17 경외투자자의 이윤을 자유롭게 송금하도록 보장한다. 경외투자자가 경내에서 법에 의거 취득한 이윤 및 배당금 등 투자수익에 대해 법에 의거 위안화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5.18 외상투자기업관리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심화한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정무서비스’를 추진하고 ‘검사대상과 집법검사인원 무작위 추출 및 추출검사 결과 공개(双随机、一公开)’ 감독관리체제를 한층 보완하며, 효율적이고 편리한 외상투자 사중사후 감독관리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상무부와 공상, 세관, 품질검사 및 외한 등 부처간 정보관리시스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외상투자기업 설립부터 운영까지의 유관 정보의 등급간 및 부처간 공유를 실현한다. 외상투자기업 상무비안과 공상등기는 ‘단일창구 및 단일양식’의 새로운 접수방식을 시범 시행한다.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품질검사총국, 국가외환국 등 유관 부처가 담당하고, 각 지방 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5.19 외자가 국내기업 구조조정 최적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한을 완화하여 경외투자자가 인수합병 방식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기업이 여러 방식으로 국제 선진기술, 관리경험과 마케팅 채널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외자가 국유기업과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발전개발위, 상무부, 국무원국자위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5.20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개선한다. 인터넷 불법해적판, 특허권 침해, 상표전용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사법보호와 행정집행을 강화하며, 권리침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다. (전국권리침해위조단속반, 공상총국, 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등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5.21 연구개발 환경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연구개발센터 운영을 위해 편의 조건을 만들고, 법에 의거 조건이 구비된 연구개발센터의 연구개발용 샘플, 시약 등의 수입수속을 간소화하여, 외자 연구개발의 투입을 촉진한다. (해관총서, 품질검사총국 등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진다)5.22 외자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투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에게 법에 의거 만든 정책승낙을 엄격히 실행하고, 투자유치 등 활동 중 법에 의거 체결한 각종 계약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가 담당)각 지역 및 각 부처는 새로운 상황 하에 외자이용 업무를 더욱 중요시 여기고,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능동적으로 행하며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각각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보장하며, 중국 투자유치의 새로운 우위를 계속 향상시켜 외자이용으로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국무원2017년 8월 8일 |  | **国务院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国发〔2017〕39号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积极利用外资是我国对外开放战略的重要内容。当前经济全球化呈现新特点，我国利用外资面临新形势新任务。为深化供给侧结构性改革，推进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改革，进一步提升我国外商投资环境法治化、国际化、便利化水平，促进外资增长，提高利用外资质量，现将有关事宜通知如下：一、进一步减少外资准入限制（一）全面实施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制度。尽快在全国推行自由贸易试验区试行过的外商投资负面清单，进一步增强投资环境的开放度、透明度、规范性。（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负责）（二）进一步扩大市场准入对外开放范围。持续推进专用车和新能源汽车制造、船舶设计、支线和通用飞机维修、国际海上运输、铁路旅客运输、加油站、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呼叫中心、演出经纪、银行业、证券业、保险业对外开放，明确对外开放时间表、路线图。（中央宣传部、中央网信办、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交通运输部、商务部、文化部、人民银行、银监会、证监会、保监会、国家铁路局、中国民航局、中国铁路总公司按职责分工负责）二、制定财税支持政策（三）鼓励境外投资者持续扩大在华投资。对境外投资者从中国境内居民企业分配的利润直接投资于鼓励类投资项目，凡符合规定条件的，实行递延纳税政策，暂不征收预提所得税。（财政部、税务总局按职责分工负责）（四）发挥外资对优化服务贸易结构的积极作用。将服务外包示范城市符合条件的技术先进型服务企业所得税优惠政策推广到全国，引导外资更多投向高技术、高附加值服务业。（财政部、商务部、税务总局等按职责分工负责）（五）促进利用外资与对外投资相结合。对我国居民企业（包括跨国公司地区总部）分回国内符合条件的境外所得，研究出台相关税收支持政策。（财政部、税务总局按职责分工负责）（六）鼓励跨国公司在华投资设立地区总部。支持各地依法依规出台包括资金支持在内的吸引跨国公司地区总部的政策措施，积极参与全球产业格局调整。（各省级人民政府负责）（七）促进外资向西部地区和东北老工业基地转移。充分发挥现有财政资金作用，积极支持西部地区及东北老工业基地的国家级开发区（含经济技术开发区、高新技术产业开发区、海关特殊监管区域等，下同）科技创新、生态环保、公共服务等领域建设，改善招商环境，提升引资质量，承接高水平制造业转移。（科技部、财政部、商务部、海关总署按职责分工负责）（八）支持重点引资平台基础设施和重大项目建设。鼓励省级人民政府发行地方政府债券支持国家级开发区、边境经济合作区、跨境经济合作区基础设施建设。加快试点发展项目收益与融资自求平衡的地方政府专项债券品种，优先保障上述区域符合条件的重大项目融资需求。（科技部、财政部、商务部、海关总署、各省级人民政府按职责分工负责）三、完善国家级开发区综合投资环境（九）充分赋予国家级开发区投资管理权限。支持国家级开发区开展相对集中行政许可权改革试点。指导国家级开发区进一步推进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改革，在营造外商投资优良环境等方面发挥示范引领作用。（中央编办、科技部、商务部、海关总署、国务院法制办按职责分工负责）（十）支持国家级开发区项目落地。允许各地在符合经济社会发展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城市总体规划的前提下，对国家级开发区利用外资项目所需建设用地指标予以优先保障，做到应保尽保。（科技部、国土资源部、住房城乡建设部、商务部、海关总署、各省级人民政府按职责分工负责）（十一）支持国家级开发区拓展引资空间。对符合条件的国家级开发区，经国务院批准后允许调区、扩区，整合区位相邻、相近的开发区，建立飞地园区，对收储的低效用地，相应提供规划调整、简化审批等便利。（科技部、国土资源部、住房城乡建设部、商务部、海关总署、各地方人民政府按职责分工负责）（十二）支持国家级开发区提升产业配套服务能力。在条件成熟的地区，引进生产服务型外资企业，试点开展高技术、高附加值项目境内外维修业务，促进加工贸易向全球产业链、价值链中高端延伸。（商务部、海关总署负责）四、便利人才出入境（十三）完善外国人才引进制度。在全国实施外国人来华工作许可制度，采用“告知+承诺”、“容缺受理”等方式，为外国人才办理工作许可提供便利。2018年，制定出台外国人在中国工作管理条例，建立标准统一、程序规范的外国人才来华工作许可制度。（外交部、公安部、国务院法制办、国家外专局等按职责分工负责）（十四）积极引进国际高端人才。2017年下半年，制定出台外国人才签证实施细则，完善外国人才评价标准，扩大发放范围；放宽外国人才签证有效期限，对符合条件的外国人，签发长期（5年至10年）多次往返签证，并可凭该签证办理工作许可、申请工作类居留证件。制定出台外国人永久居留管理条例，明确外国人申请和取得永久居留资格的条件和程序。（外交部、公安部、国务院法制办、国家外专局等按职责分工负责）五、优化营商环境（十五）抓紧完善外资法律体系。加快统一内外资法律法规，制定新的外资基础性法律。清理涉及外资的法律、法规、规章和政策性文件，推动限期废止或修订与国家对外开放大方向和大原则不符的法律法规或条款。（有关部门和各省级人民政府按职责分工负责）（十六）提升外商投资服务水平。完善中央及地方外商投资企业投诉机制，协调解决境外投资者反映的突出问题，加大对外商投资企业享有准入后国民待遇的保障力度，努力营造统一开放、竞争有序的市场环境。建立行政事业性收费和政府性基金、政府定价的涉企经营服务性收费等涉企收费目录清单制度。（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商务部等有关部门、各省级人民政府按职责分工负责）（十七）保障境外投资者利润自由汇出。对于境外投资者在境内依法取得的利润、股息等投资收益，可依法以人民币或外汇自由汇出。（人民银行、国家外汇局按职责分工负责）（十八）深化外商投资企业管理信息共享和业务协同。积极推进“互联网+政务服务”，进一步完善“双随机、一公开”监管机制，构建高效便捷的外商投资事中事后监管与服务体系。加大商务部门与工商、海关、质检、外汇等部门之间信息管理系统的互联互通力度，实现外商投资企业从设立到运营的有关信息跨层级、跨部门共享。试点外商投资企业商务备案与工商登记“单一窗口、单一表格”受理新模式。（商务部、海关总署、工商总局、质检总局、国家外汇局等有关部门负责，各地方人民政府按职责分工负责）（十九）鼓励外资参与国内企业优化重组。简化程序，放宽限制，支持境外投资者以并购方式设立外商投资企业。支持国内企业多渠道引进国际先进技术、管理经验和营销渠道。鼓励外资参与国有企业混合所有制改革。（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国务院国资委按职责分工负责）（二十）完善外商投资企业知识产权保护。针对网络侵权盗版、侵犯专利权、侵犯商标专用权等知识产权问题开展集中整治，强化司法保护和行政执法，加大对侵权违法行为的惩治力度。（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办公室、工商总局、新闻出版广电总局、国家知识产权局等按职责分工负责）（二十一）提升研发环境国际竞争力。为研发中心运营创造便利条件，依法简化具备条件的研发中心研发用样本样品、试剂等进口手续，促进外资研发投入。（海关总署、质检总局等按职责分工负责）（二十二）保持外资政策稳定性连续性。地方各级人民政府要严格兑现向投资者及外商投资企业依法作出的政策承诺，认真履行在招商引资等活动中依法签订的各类合同。（各省级人民政府负责）各地区、各部门要高度重视新形势下利用外资工作，按照职责分工，主动作为，密切配合。商务部要会同有关部门加强督促检查，确保各项措施落到实处，不断提升我国引资新优势，促进利用外资实现稳定增长。国务院 2017年8月8日　　　 　　 |